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38호로 2025년 11월 7일 이규선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임신축하 지원금,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안 제5조)

라. 지원내용(안 제6조)

마. 임산부의 날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11.7.~11.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임산부·태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조	제 명	내 용
제1조	**목적**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사항 규정
제2조	**정의**	임산부, 태아, 임신축하 지원금, 영등포사랑상품권의 용어 정의
제3조	**책무**	저출산 대책 적극 발굴 및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시행
제4조	**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률 및 다른 조례 규정 있는 경우 제외 본 조례 따름
제5조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영등포구 주민** -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적용
제6조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 추진 및 경비 지원** - 임신축하 지원금 - 임산부 등록관리 등 건강지원 -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사업 -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
제7조	**임산부의 날**	임산부의 날에 행사 개최 가능
제8조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가능
제9조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임산부의 날,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 관련 규정으로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축하 지원금,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출산 인식 개선 홍보 등 예방 중심 정책을 규정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유도, 지역사회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축하지원금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음.

【임신축하 지원금 지원 현황】

지자체명	제공유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금지금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경기도 과천시	지역화폐
경기도 김포시	현금지급
경기도 군포시	현금지급
경기도 양주시	현금지급
충청남도 청양군	현금지급, 현물지급
경상남도 진주시	지역화폐
무주군	현금지급, 현물지급
부산광역시 중구	현금지급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검색 결과

- 임신축하 지원금은 사회보장급여 성격의 금전 지급 규정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1]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신규 사회보장 제도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부 지원 사항(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재 우리 구(區)에서는 임산부를 포함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와 태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상관없이 임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지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 이후(신생아, 가족) 중심이었다면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 이전(임산부, 태아) 중심으로 규정하여 생애주기 전체 단계로 정책 영역을 확장하여 정책 공백을 해소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1)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